회원신고관리규정

제정 1972. 4. 27.
개정 1979. 11. 13.
개정 1980. 5. 1.
개정 1981. 4. 1.
개정 1984. 4. 12.
개정 1995. 6. 13.
개정 1998. 3. 4.
개정 2001. 4. 10.
개정 2005. 6. 7.
개정 2006. 1. 10.
개정 2007. 4. 17.
개정 2009. 1. 20.
개정 2009. 3. 10.
개정 2013. 8. 21.
개정 2014. 5. 14.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7조에서 정한 대한건축사협회(이하"협회"라 한다.) 회원의 입회, 퇴회 등의 신고절차와 방법 등 회원의 정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4.10, 2014. 5.14(시행일 2014. 11.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 4.10, 2013. 8.21, 2014. 5.14(시행일 2014. 6.11)>

1. 입 회 :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협회에 최초로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2. 퇴 회 : 회원으로서의 자격과 권리,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3. 전 출 : 정회원이 소속 건축사회에서 다른 건축사회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4. 전 입 : 정회원이 다른 건축사회에서 해당 건축사회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5. 직권퇴회 :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협회가 회원의 자격과 권리, 의무를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입회 : 회원자격이 상실된 자가 다시 협회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정회원

제3조(신고사항) ①정회원 또는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정회원신고서 및 증빙서류 등을 해당 건축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14(시행일 2014. 6.11)>

1. 입 회
2. 퇴 회
3. 재 입 회
4. 전출 및 전입
5. 연락처, 근무처, 학력, 자격 등의 변동

②건축사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신고사항 적용일자는 접수일자로 한다. <개정 2014. 5.14(시행일 2014. 6.11)>

③정회원의 소속 건축사회는 근무처 정보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 5.14(시행일 2014. 6.11)>

1.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정회원 : 건축사사무소 소재지 관할 건축사회
2.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근무처에 소속된 정회원 : 근무처 소재지 관할 건축사회
3. 근무처가 없는 정회원 : 자택 소재지 관할 건축사회 또는 본인이 선택한 건축사회

④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입회 또는 재입회하는 경우 기존 회원자격(준회원, 전문회원, 예비회원, 학생회원)은 자동 상실된다. <개정 2014. 5.14(시행일 2014. 6.11)>

⑤정회원의 회비 및 퇴회위로금 등에 관한 사항은 회비의 수납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경조비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4. 5.14(시행일 2014. 6.11)>

제4조(직권퇴회) ①협회는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승인을 얻어 해당 정회원을 직권퇴회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5.14(시행일 2014. 11.1)>

1. 건축사사무소 개설 또는 근무처 입사로 소속 건축사회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설일 또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건축사회에 전출 및 전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건축사 자격 또는 건축사 자격등록이 취소된 경우
3. 사망, 실종 등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협회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직권퇴회 조치 사유가 해소된 경우 즉시 직권퇴회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14(시행일 2014. 11.1)>

③협회가 정회원을 직권퇴회 조치 또는 직권퇴회 해제한 경우, 그 사실을 각

건축사회 및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14(시행일 2014. 11.1)>

제5조(재입회) ①협회에 정회원으로 재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재입회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5.14(시행일 2014. 6.11)>

1. 퇴회 후 다시 입회하고자 하는 자
2. 정관 제5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 협회에 다시 입회하고자 하는 자
3. 정관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명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 협회에 다시 입회하고자 하는 자
4. 전출 및 전입신고 미 이행으로 직권퇴회 조치된 후 협회에 다시 입회하고자 하는 자
5. 건축사 자격 또는 자격등록 취소로 직권퇴회 조치된 이후 건축사 자격을 등록하고 협회에 다시 입회하고자 하는 자

②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재입회한 정회원은 정회원 가입기간 산정시 종전 정회원 가입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5.14(시행일 2014. 6.11)>

제6조(전출 및 전입) ①정회원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소속 건축사회가 변경된 경우 전출 및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사무소 개설 또는 근무처 입사로 소속 건축사회가 변경된 경우는 개설일 및 입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14(시행일 2014. 11.1)>

②정회원이 전출 및 전입신고를 한 경우 소속 건축사회 변경시점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14. 5.14(시행일 2014. 11.1)>

1. 정회원이 전출지 건축사회에 전출 및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접수일까지는 전출지 건축사회 소속으로 하고 익일부터는 전입지 건축사회 소속으로 한다.
2. 정회원이 전입지 건축사회에 전출 및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접수일의 직전일 까지는 전출지 건축사회 소속으로 하고 신고 접수일부터는 전입지 건축사회 소속으로 한다.

③건축사회는 전출 및 전입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정회원 회비관련 사항을 처리하고 전출 및 전입사실 등을 해당 건축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14(시행일 2014. 11.1)>

제7조(권리 정지 및 회복) ①협회는 정회원이 건축사사무소 개설 또는 근무처 입사로

소속 건축사회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설일 또는 입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출 및 전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정회원의 권리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4. 5.14(시행일 2014. 11.1)>

②협회는 제1항에 따라 정회원의 권리를 정지한 경우, 권리정지 승인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정회원의 권리정지 사실을 건축사회 및 당사자 또는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14(시행일 2014. 11.1)>

③협회는 전출 및 전입신고 미 이행으로 권리가 정지된 정회원이 전출 및 전입신고를 이행한 경우, 즉시 권리를 회복시켜야 한다. <신설 2014. 5.14(시행일 2014. 11.1)>

제8조(정보 기록 및 관리 등)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14(시행일 2014. 11.1)>

1. 제3조에 따른 정회원 신고사항
2. 정관 제11조의2, 제54조, 제55조에 따른 정회원 징계사항
3. 제4조에 따른 정회원 직권퇴회 조치 및 해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정회원 권리 정지 및 회복 사항
5. 협회가 정회원 정보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 3 장 준회원, 전문회원, 예비회원, 학생회원

제9조(신고사항) ①준회원, 전문회원, 예비회원, 학생회원(이하 “정회원외 회원”이라 한다.) 및 정회원외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신고서 및 증빙서류 등을 해당 건축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준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입　　회
2. 퇴　　회
3. 재 입 회
4. 연락처, 근무처, 학력, 자격 등의 변동

②정회원외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입회 또는 재입회는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일부터 입회 또는 재입회 된다. 다만,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신고사항 적용일자는 접수일자로 한다.

③건축사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접수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정회원외 회원의 소속은 협회로 한다. 다만, 준회원은 입회 또는 재입회 신고를

한 건축사회를 소속 건축사회로 한다.
<본조신설 2014. 5.14(시행일 2014. 11.1)>

제10조(직권퇴회) ①협회는 정회원외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퇴회 조치할 수 있다.
1. 준회원이 2년 이상 연회비를 미납한 경우
2. 협회 입회 당시의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3. 회원의 종류가 중복되는 경우
4. 사망, 실종 등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협회는 제1항 제4호의 직권퇴회 조치사유가 해소된 경우 즉시 직권퇴회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협회는 정회원외 회원을 직권퇴회 조치 또는 직권퇴회 해제한 경우 그 사실을 건축사회 및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5.14(시행일 2014. 11.1)>

제11조(정보 기록 및 관리 등)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정회원외 회원의 신고사항
2. 제10조에 따른 정회원외 회원의 직권퇴회 조치 및 해제 사항
3. 협회가 정회원외 회원의 정보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본조신설 2014. 5.14(시행일 2014. 11.1)>

제12조(보칙) 정관 및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규정의 범위 내에서 회장이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5.14(시행일 2014. 11.1)>

부 칙

본 규정은 1972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8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본 규정은 198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 규정에 의거 폐업위로금을 지급받은 자가 재입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입회비와 함께 폐업시에 지급받은 폐업위로금을 본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84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1995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1998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제3조제2항 및 제7조제1항의 개정에 불구하고 동 규정 개정 이전에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②제12조제2항제1호에 의한 폐업위로금 반납은 폐업후 5년 이내에 재입회한 경우에 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1년 1월 1일이후 입회한 자중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신고된 자는 개정규정에 의거 신고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경조비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 협회에서 지급하여야 한다.”를 “본 협회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은 2000년 12월 31일이전 입회한 회원에 한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규정 제6조 및 제12조제3항은 2005년 2월 2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휴업회원에 대한 적용특례) 이 규정 시행일 현재 휴업중인 회원의 관청신고 휴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이 개정규정에 따라 휴업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회비의 수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의 단서조항 “다만, 회원신고관리규정 제12조제2항에 ~ 입회비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를 “다만, 회원신고관리규정 제12조제2항및제3항 규정에 의한 입회비 면제대상 재입회 회원에 대하여는 입회비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비미납으로 제명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회비미납으로 제명처분 받은 자중 협회 회원으로 미가입한 자는 이규정 시행일에 제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5조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관개정이 승인된 날(2014. 6.11)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규정 시행일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폐업한 정회원은 이 규정에 따라 퇴회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휴업신고된 정회원에 대하여는 재개업 신고 직전 월까지 회비를 면제하고, 휴업기간은 정회원 가입기간 산정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종전 정관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명된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정관개정이 승인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재입회하는 경우 이 규정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회원 가입기간 산정시 종전 정회원 가입기간을 산입한다.

■ 회원신고관리규정 【별지 제1호 서식】정회원신고서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		결재				
정회원 번호						

정회원 신고서

신고종류

※ 접수 담당자가 기재합니다.

☐ 입 회	☐ 근무처 있음 ☐ 근무처 없음		( )건축사회 ( )지역건축사회	
☐ 퇴 회	사유 :	근무처(사무소) ☐ 폐업 ☐ 퇴사	☐ 퇴회위로금 지급대상자(☐ 수령 ☐ 미수령) ☐ 퇴회위로금 미지급대상자	
☐ 재 입 회	☐ 근무처 개설 ☐ 근무처 입사 ☐ 근무처 없음	( )건축사회 ( )지역건축사회	☐ 퇴회위로금 수령자 ☐ 퇴회위로금 미수령자	
☐ 변동사항	전출 및 전입		근무처(사무소)	( )건축사회 ( )지역건축사회 ☐ 연락처
	전출지	전입지		☐ 개설 ☐ 입사 ☐ 폐업 ☐ 퇴사 ☐ 학 력
	☐ 근무처 폐업 ☐ 근무처 퇴사 ☐ 근무처 없음	☐ 근무처 개설 ☐ 근무처 입사 ☐ 근무처 없음		☐ 사무소 형태 ☐ 사무소명 ☐ 소재지 ☐ 자 격
	( )건축사회 ( )지역건축사회	( )건축사회 ( )지역건축사회		☐ 전화 ☐ FAX ☐ 기 타 ( )
	☐ 권리회복			☐ 근무처 없음

신고인	성 명	건축사 자격번호	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①연락처

자택주소	우)	전 화	
우편물 수령지	우)		
휴 대 폰		E-mail	

②근무처

변경전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번호	건축사사무소일 경우만 기재 - 건축사사무소 -	사무소 형태	☐ 개인 ☐ 법인
			근무 형태	☐ 개설자(대표자) ☐ 소속
	사무소명		개설/입사일자	
			폐업/퇴사일자	
	소 재 지	우)	전 화	
			FAX	
변경후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번호	건축사사무소일 경우만 기재 - 건축사사무소 -	사무소 형태	☐ 개인 ☐ 법인
			근무 형태	☐ 개설자(대표자) ☐ 소속
	사무소명		개설/입사일자	
			폐업/퇴사일자	
	소 재 지	우)	전 화	
			FAX	

③학력

학 교	학과(전공)	학 위	졸업/취득 년월일
			. .
			. .

④자격

자 격 명	자격번호	자격취득 년월일	발 행 처
		. .	
		. .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신고관리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회 회장 귀하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뒷쪽)

▣ 첨부서류

※ 첨부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함.

1) 반명함판 사진 2매

2) 근무처에 관한 첨부서류(해당자에 한함)

가)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1부

나) 건축사사무소 소속된 자

: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1부, 재직증명서 1부 또는 4대 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中 택1)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 1부

다)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근무처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사본 1부

라)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근무처 소속된 자

: 재직증명서 1부 또는 4대 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中 택1)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 1부

마) 근무처가 없는 자(현재 근무처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

: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中 택1)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 1부

3) 학력, 자격에 관한 첨부서류(해당자에 한함)

가) 학력 : 졸업증명서, 학위취득증명서 등

나) 자격 : 자격증 사본 등

※ 학력 및 자격의 첨부서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

■ 회원신고관리규정 【별지 제2호 서식】정회원신고서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	
정회원 번호	

결재				

회원 신고서

신고종류

※ 접수 담당자가 기재합니다.

□ 입 회	□ 준회원	( )건축사회 ( )지역건축사회	
	□ 전문회원 □ 예비회원(□실무수련자,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 학생회원		
□ 퇴 회	사유 :		
□ 재 입 회	□ 준회원	( )건축사회 ( )지역건축사회	
	□ 전문회원 □ 예비회원(□실무수련자,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 학생회원		
□ 변동사항	□ 연락처	근무처(사무소)	□ 근무처 변경 □ 사무소명 □ 소재지 □ 전화 □ FAX
□ 학 력	□ 자 격		

※ 신규입회, 재입회의 경우만 해당사항을 모두 기재하시고, 이외는 변동신고 사항만 기재

신 고 인	성 명	건축사 자격번호	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①연락처

자택주소	우)	전 화	
우편물 수령지	우)		
휴 대 폰		E-mail	

②근무처

※ 준회원, 전문회원, 예비회원은 필수 기재

변경전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번호	건축사사무소일 경우만 기재 - 건축사사무소 -		
	근무처명		전 화	
	소 재 지	우)	FAX	
변경후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번호	건축사사무소일 경우만 기재 - 건축사사무소 -		
	근무처명		전 화	
	소 재 지	우)	FAX	

③학력

학 교	학과(전공)	학 위 □재학 □졸업	졸업/취득 년월일
			. .

④자격

자 격 명	자격번호	자격취득 년월일	발 행 처
		. .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신고관리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회 회장 귀하

▣ **첨부서류 :** (뒤쪽) 참조

(뒷쪽)

▣ 첨부서류

※ 첨부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함.

1) 반명함판 사진 1매

2) 근무처에 관한 첨부서류(건축사사무소 소속된 자 또는 건축사사무소가 아닌 근무처 소속된 자)
: 재직증명서 1부 또는 4대 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中 택1)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증명서 1부

3) 학력, 자격에 관한 첨부서류(해당자에 한함)
가) 학력 : 졸업증명서, 학위취득증명서 등
나) 자격 : 자격증 사본 등
※ 학력 및 자격의 첨부서류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음.